

기타

교직원 상조 규정

제1조 (목적)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조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회원의 자격은 본 대학의 정직원으로 한다.

1. 교원 -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겸임, 특임, 강사, 초빙, 석좌, 대우교수 등등
2. 직원 -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

제3조 (경조사)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조비를 거출하여 지급한다.

1. 경사 - 본인의 결혼, 자녀의 결혼
2. 조사 -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,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, 자녀의 사망

제4조 (거출액) 경조비는 각 회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거출한다.

1. 교원 - 30,000원
2. 과장 이상 - 30,000원
3. 직원 - 20,000원

제5조 (경조금 수령) 경조금 수령자는 사유 발생일 7일 전후에 그 사유에 관한 관련 서류를 총무과에 제출하고 경조금을 수령한다.

제6조 (화환) 학교 총장 명의의 조화를 보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